

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

(김혜련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62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8월 11일

발 의 자 : 김혜련, 권수정, 김경우,
김기대, 김기덕, 김정환,
김제리, 김평남, 박기열,
박기재, 박상구, 박순규,
서윤기, 송아량, 양민규,
유정희, 이광호, 이영실,
이정인, 장상기, 전석기,
홍성룡, 황규복 의원(23
명)

1. 제안이유

-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세계질서 재편에 대비해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(2021.7.20.)된 바 있음.
-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성 우려로 “서울특별시 미래혁신 기술 진흥 조례”가 폐지되었고, 실증사업과 경진대회 등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마련한 바 있음.
- 다만, 제정 조례의 실효성 확보와 기존 정책과의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주요 정책을 조례로 규정하고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.
- 따라서 실증사업 및 경진대회, 적극행정의 면책 조항과 민간위탁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한편, 4차 산업혁명 추진력 강화를 위해 위원회 기능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혁신기술 등의 용어 정의(안 제2조제2호, 제3호).

- 나. 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의 추진 근거와 선정 기준을 정함(안 제8조 신설).
- 다. 혁신기술 경진대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(안 제9조 신설)
- 라. 위원회의 기능에 '자문'기능을 추가하고 공동위원장 체제로 변경함(안 제10조 및 제11조)
- 마. 분과위원회 운영 근거를 규정함(안 제15조 신설)
- 바.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근거를 규정함(안 제17조)
- 사. 적극행정의 면책 조항을 신설함(안 제18조 신설)

3. 참고사항
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4차 산업혁명”이란 과학기술·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·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.
2. “혁신기술”이란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첨단 기술을 의미하며, 다음 각 목의 신기술을 포함한다.
 - 가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신기술
 - 나.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신기술
 - 다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1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방재신기술
 - 라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 받은 신기술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신제품
 - 마. 그 밖에 새로운 특허공법 및 기술로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위

원회에서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
3. “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”이란 기술기반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·서비스를 정책적으로 구매하거나 실증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시장성 점검 및 판로개척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신기술”을 “혁신기술”로 한다.

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, 제13조를 제16조로 하며,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, 제8조, 제9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) ① 시장은 기술 기반 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(이하 “실증사업”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매년 실증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③ 실증사업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 직전에 있는 제품·서비스
2. 출시 직후 판매실적이 필요한 제품·서비스
3. 그 밖에 혁신기술 육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제품·서비스

④ 시장은 혁신기술을 보유한 국내·외 기업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이를 상시 또는 분기별로 평가하고 실증사업으로 결정함을 원칙으

로 한다.

⑤ 시장은 제4항의 실증사업을 결정하면서 공공구매나 실증단지 지정·조성 등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과 실증사업 지원을 위한 행정기구 또는 소속기관을 정할 수 있다.

⑥ 시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먼저 실증사업 내용을 정하여 공고하고 이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신청자들 중에서 적절한 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.

⑦ 시장은 실증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사업 수행 성과를 대외적으로 공개, 공유할 수 있으며, 실증사업에 직·간접적으로 참여한 이해관계자는 공개, 공유에 협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혁신기술 경진대회) ① 시장은 과학기술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협업과 기술간 융·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기술 경진대회(이하 “경진대회”라 한다)를 개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경진대회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, 대학, 기업뿐 아니라 해외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외국인, 대학, 기업 등에게도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경진대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·외 정부, 공공기관, 대학, 연구기관,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경진대회에서 발굴된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자에게 후속 연구개발비 및 판로개척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5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분과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10조(중전의 제8조)제1항 중 “심의·점검하기”를 “심의·자문하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심의한다”를 “심의·자문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심의하기”를 “심의·자문하기”로 한다.

제10조(중전의 제8조)의 제목 “(위원회의 설치)”를 “(4차 산업혁명위원회)”로 한다.

제11조(중전의 제9조)제1항 중 “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”을 “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장으로 하며, 부위원장은”을 “시장과 위촉직”으로, “호선한다”를 “호선된 사람으로 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중전의 제3항) 제1호 중 “전담기관”을 “관련 산하기관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.

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(사무의 위탁)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증사업과 경진대회, 관계기관의 지정·운영 등 그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8조(적극행정의 면책)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실증사업이나

경진대회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4차 산업혁명”이란 과학기술·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·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4차 산업혁명”이란 과학기술·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·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. 2. “혁신기술”이란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첨단 기술을 의미하며, 다음 각 목의 신기술을 포함한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신기술 나.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」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신기술 다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1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방재신기술 라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

제15조의2에 따라 인증 받은 신기술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신제품

마. 그 밖에 새로운 특허공법 및 기술로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
3. “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”이란 기술기반의 중소기업 등 기업육성을 위해 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·서비스를 정책적으로 구매하거나 실증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시장성 점검 및 판로개척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.

제7조(창업 및 기술지원 등)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창업자나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1. ~ 3. (생략)
- ② (생략)

제7조(창업 및 기술지원 등) ① -

----- 혁신
기술-----

-----.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제8조(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)

① 시장은 기술 기반 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(이하 “실증사업”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매년 실증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③ 실증사업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 직전에 있는 제품·서비스

2. 출시 직후 판매실적이 필요한 제품·서비스

3. 그 밖에 혁신기술 육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제품·서비스

④ 시장은 혁신기술을 보유한 국내·외 기업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이를 상시 또는 분기별로 평가하고 실증사업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⑤ 시장은 제4항의 실증사업을 결정하면서 공공구매나 실증단

지 지정·조성 등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과 실증사업 지원을 위한 행정기구 또는 소속기관을 정할 수 있다.

⑥ 시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먼저 실증사업 내용을 정하여 공고하고 이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신청자들 중에서 적정한 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.

⑦ 시장은 실증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사업 수행 성과를 대외적으로 공개, 공유할 수 있으며, 실증사업에 직·간접적으로 참여한 이해관계자는 공개, 공유에 협력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9조(혁신기술 경진대회) ① 시장은 과학기술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협업과 기술간 융·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기술 경진대회(이하 “경진대회”라 한다)를 개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경진대회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, 대학, 기업뿐 아니라 해외에

거주 또는 소재하는 외국인, 대학, 기업 등에게도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경진대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·외 정부, 공공기관, 대학, 연구기관,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경진대회에서 발굴된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자에게 후속 연구개발비 및 판로개척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시장은

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·점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~ 5. (생략)

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, 4차

제10조(4차 산업혁명위원회) ① -

----- 심의·자문하기 -----

-----.

② -----
-- 심의·자문한다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 심의·자문하기 -----

산업혁명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,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.

<신 설>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해당업무 실·국장, 전담기관의 장
2. (생략)
3.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·기술·산업·경제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
4. (생략)

--.

제11조(위원회 구성) ① -----
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-----

-----.

② ----- 시장과 위촉직 ---
----- 호선된 사
람으로 한다.

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에 호선한다.

④ -----

-----.

1. ----- 관련 산하
기관-----

2. (현행과 같음)
3. -----

- 사람
4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 ~ 제12조 (생략)

<신설>

제13조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제12조 ~ 제14조 (현행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)

제15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분과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16조 (현행 제13조와 같음)

제17조(사무의 위탁)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증사업과 경진대회, 관계기관의 지정·운영 등 그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8조(적극행정의 면책)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실증사업이나 경진대회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등의 책

제14조 ~ 제16조 (생략)

임을 묻지 아니한다.

제19조 ~ 제21조 (현행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)